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단5567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혁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2020. 5. 1. 이루어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3층) 96.32㎡, 상호 'E'바에 대한 영업자지위 승계에 대한 영업권 양도계약을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에게 2019. 1. 4.부터 2019. 3. 22.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1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F는 원고에게 6장의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C는 연대보증의 의미로 위 각 차용지불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2019. 2. 15.부터 2019. 7. 25.까지 합계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원고는 이를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7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9. 18. ‘C는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20. 5. 1. G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H(D) 건물의 3층 96.32㎡(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65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2. 5. 1.부터 2022.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자 C는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변제할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3층) 96.32㎡, 상호 ‘E’바에 대하여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2020.

5. 1.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 2020. 5. 1. 'E'바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영업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와 피고 사이에 'E'바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가 2016.경부터 2020. 4.경까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바를 운영하였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한 영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② C가 'E' 바를 폐업할 경우 인테리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이에 피고가 위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용하고 임대차종료 시에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임대인 G와 협의하여 2020. 5. 1.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항에서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필요에 의해 시설(기구 포함) 부분과 종전 및 전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부분도 완전철거 원상복구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임대인에게 시설 권리금, 유익비, 필요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로부터 'E' 바에 대한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영업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임대인 G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